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96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서미화・이병진・김예지

박정현 · 강준현 · 조인철

박해철 · 김성환 · 박희승

임호선 • 박지원 • 이기헌

송재봉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군인 재해보상법」은 제33조를 통해 "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"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.

하지만 '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'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'조현병'등 정신장애의 경우,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장애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.

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

'장애보상금'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'퇴직 후 18개월 이내'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(안 제3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6개월 이내에"를 "18개월이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3조(장애보상금) ① 지원에 의	제33조(장애보상금) ①		
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			
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			
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			
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<u>6개</u>	<u>18</u>		
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	개월 이내에		
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			
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			
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			
을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			
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			
「군인사법」 제54조의3에 따			
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(이하			
"전공사상심사위원회"라 한다)			
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			
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			
는 경우에만 지급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